

[붙임3]

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에 따른 청원경찰 임용자격

□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3조(임용자격)

제3조(임용자격)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8세 이상인 사람
2.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

□ 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4조(임용의 신체조건)

제4조(임용의 신체조건) 영 제3조 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
2. 시력(교정시력을 포함한다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일 것